

BK21 플러스 사업

부적정 예산집행 사례집

2017. 7.



BrainKorea21^{PLUS}





C O N T E N T S



PART 1 사업비 집행 및 관리

- 06 1. 사업비의 총당
- 06 2. 사업비 집행 및 관리
- 06 3. 사업단의 회계 및 계정
- 07 4.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
- 07 5. 사업비의 집행
- 07 6. 사업비 이월 허용범위
- 08 7. 예금이자 및 수익금의 처리
- 08 8. 사업비 정산 및 사용실적 보고



PART 2 사업비(예산) 집행 및 관리 업무 세부내용

- 10 1. 예산편성 및 변경
- 14 2. 사업비 집행계획 제출
- 14 3. BK21 플러스 사업비 항목별 집행 기준



PART 3 사업비 집행 관련 주요 위반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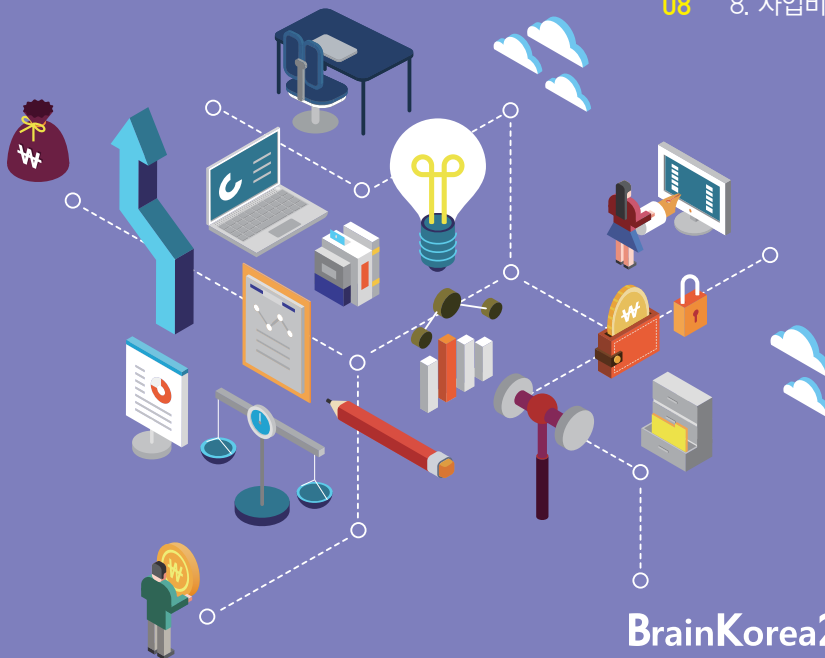
- 18 1. 사업단(팀) 자체 운영규정 미흡
- 20 2. 예산비목별 부적정 집행 사례



부적정 예산집행 사례집



- 06 1. 사업비의 총당
- 06 2. 사업비 집행 및 관리
- 06 3. 사업단의 회계 및 계정
- 07 4.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
- 07 5. 사업비의 집행
- 07 6. 사업비 이월 허용범위
- 08 7. 예금이자 및 수익금의 처리
- 08 8. 사업비 정산 및 사용실적 보고

BrainKorea21^{PLUS}



1 사업비의 총당

- BK21 플러스 사업 선정 사업단(팀)의 사업비는 100% 정부출연금으로 총당함

2 사업비 집행 및 관리

- 사업비의 지출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항목별 예산편성 비중과 집행 기준은 훈령의 각각 [별표 3] 및 [별표 4]를 따름

사업비 지출 항목

1.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2. 인건비(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 전담인력)
3. 교육과정개발비
4.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 지원비
5. 국제화경비
6. 사업단 운영비
7. 간접비



- 대학은 각 사업단별 사업비의 5% 범위에서 사업단(팀)의 총괄 관리를 위한 간접비를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음

3 사업단의 회계 및 계정

- 사업단의 수입과 지출은 대학의 산학협력단 회계에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임
- 사업비는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 회계관련 증빙서류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준용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함
- 사업비 회계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4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

- 대학의 장은 매 사업연도마다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결정하여 통보한 사업비 범위에서 해당 사업 연도의 구체적인 사업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대학의 장은 사업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이 훈령의 범위에서 대학자체 규정 또는 지침을 정할 수 있음
- 위 사업비 집행계획 제출 시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도별 예산편성 및 사업운영계획 등의 작성 기준을 별도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함

5

사업비의 집행

- 사업비는 해당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중앙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단이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직접 집행하거나 관리할 수 없음
- 사업비는 토지 및 건물매입, 시설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사업비는 사업단 또는 산학협력단의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의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집행하고, 그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함
- 사업비는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비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7

6

사업비 이월 허용범위

- 사업비는 매 회계연도 내에 전액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집행 후 잔액을 차기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음
-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위 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비의 이월 한도를 정하거나, 이월 현황을 차기년도 국고 지원 시 반영하여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를 위해 해당연도 사업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 및 발생이자를 더한 금액의 15% 이내에서 이월이 가능하며 이월범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연도 사업비 배부 시 감액 조정할 수 있음



7

예금이자 및 수익금의 처리

- 사업비의 예금이자자는 해당 사업단 사업비에 산입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이자 발생 내역 등을 사업단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제34조(사업비 정산 및 사용실적 보고)에 따른 연도별 사업정산 및 사용실적 보고 시 이자발생 내역 및 사용내역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사업단의 연구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과 산업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 기타 기술료 등의 과실은 관계법령 및 관련 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에 귀속할 수 있음

8

사업비 정산 및 사용실적 보고

8

- 사업비 및 이자의 집행잔액은 총 사업기간 종료 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단장 및 대학의 장은 매년도 소속 사업단의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매년도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알아두면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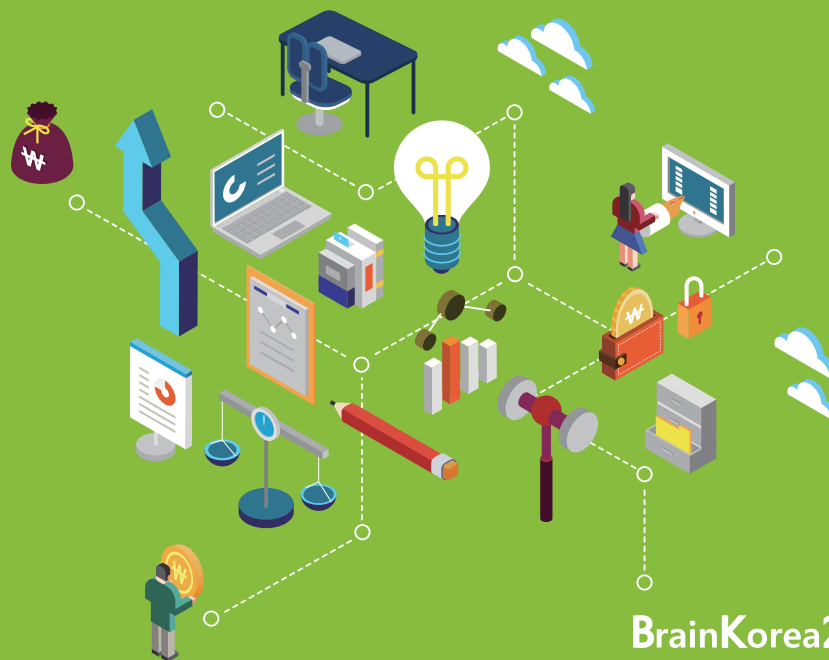
지출원인행위 무효

- 사업내용과 관련 없는 지출원인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 당해 계정과목으로 예산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또는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원인을 하는 경우
- 계정과목에 예산이 계상되어있지 않음에도 지출원인을 하는 경우
- 정당한 권한을 갖지 않는 자가 행한 지출 원인 행위
- 정관 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지출 원인행위
- 기타 사업이나 기관에 상당한 손실이 초래될 것으로 예기되는 지출 원인행위

부적정 예산집행 사례집



1. 예산편성 및 변경
2. 사업비 집행계획 제출
3. BK21 플러스 사업비 항목별 집행 기준

BrainKorea21^{PLUS}



PART 2

사업비(예산) 집행 및 관리 업무 세부내용

1

예산편성 및 변경



예산편성개요

- 전체사업비를 기준으로 항목별 편성비율에 맞추어 예산편성
- 예산변경은 대학 내 자체 승인에 따라 가능. 단, 항목별 최소 및 최대 지원 비율 준수
 - ※ 성과급 및 간접비 증액 불가



예산편성기준

- 유형별 예산편성기준

항 목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특화전문 인재양성 사업	사업비 편성내용
		기초과학/ 응용과학	인문사회	사업팀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60% 이상 ※의·치· 한의학분야 50% 이상	50% 이상	50% 이상	40% 이상	50% 이상	• 석·박사과정 학생에 대한 연구장학금 지원 － 석사과정: 월 60만원 이상 － 박사과정: 월 100만원 이상
인건비	신진 연구인력 인건비	비율제한 없음					• 월 250만원 이상
	산학협력 전담인력						• 주관대학 지급 기준에 따름
교육과정 개발비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 지원비							
국제화경비							
사업단 운영비		10% 이내 또는 3,000만원 이내					•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예산 편성 비율은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함
간접비		5% 이내					

- 단, 정부부처로부터 대학원생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특수대학의 경우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을 지원할 수 없음
 - 특수대학(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의 사업비 항목별 예산편성 기준

항 목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	글로벌인재양성형	특화전문인재양성사업
대학원생연구장학금	미지원	미지원	미지원
신진연구 인력지원비	제한 없음		
산학협력전담인력인건비			
교육과정개발비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 지원비			
국제화경비			
사업단 운영비	25% 이내	15% 이내	25% 이내
간접비	5% 이내		



예산변경

11

- 사업비 항목 내/항목 간의 예산 변경은 대학 내 자체 승인에 따라 처리하되, 항목별 최소 및 최대 지원 비율을 준수하여야 함. 단, 성과급 및 간접비는 증액할 수 없음



알아두면 좋아요

비목별 이월 및 편성 기준

- 연간 총 사업비(당해연도 최초 협약액+전년도 이월액+당해연도 이자발생액)중 연구장학금, 사업단 운영비, 간접비 편성비율 준수
- 원칙적으로 이월금 편성시 비목/세목간 금액 변경은 가능(실제 사용 가능 항목에 편성하되, 아래 제한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 연구비카드 시스템에 비목/세목간 이월금 변경 입력 가능. 단, 연구비 카드시스템 입력 완료 후 변경은 불가

〈이월금 편성 시 제한 기준〉

- 연구장학금 이월액은 연구장학금으로만 편성 가능하며,
- 사업단 운영비, 간접비는 전년도 해당 비목 집행잔액을 초과하여 이월반영 불가(해당 잔액을 타 비목으로 변경은 가능)
- 사업단 운영비 중 성과급은 전년도 해당 세목 집행잔액을 초과하여 이월반영 불가(해당 잔액을 타 비(세)목으로 변경은 가능)



PART 2

사업비(예산) 집행 및 관리 업무 세부내용

● '17년도 협약금액 편성·변경·관리

- '17년도 협약금액에 대한 예산 변경은 대학 내 승인 하에 가능
- 단, 이월금을 제외한 당해연도 협약 예산편성 비율은 훈령 별표 3에 따른 예산편성 기준(비율)을 준수하여야 함
(예시) 이월금을 제외한 당해연도 최초 사업비가 15억원인 경우, 당해연도 협약 예산만으로도 연구장학금 7.5억원 (미래기반 과기 사업단 9억원, 글로벌인재양성형 6억원) 이상, 사업단 운영비 1.5억원 이내, 간접비는 7.5천만원 이내여야 함

[설명] 당해연도 최초·총 사업비 편성

- 당해연도 최초 사업비 = 전년도 사업비 이월승인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최초 협약액
- 당해연도 최초 사업비 대비 항목별 편성비율 준수하여야 함
- 당해연도 총 사업비 = 당해연도 최초 사업비+전년도 이월액+당해연도 발생이자
- 당해연도 총 사업비 대비 항목별 편성 비율을 준수하여 연구비카드시스템에 이월금 입력을 통해 이월금 활용계획 확정

〈 BK21 플러스 사업 전년도 집행잔액 이월 및 편성 기준 〉

비목명	당해연도 최초 사업비 편성	이월금 관리	당해연도 총 사업비 편성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 당해연도 최초 사업비 대비 40~60%(유형별·분야별 기준) 이상 유지	• 전년도 연구장학금 잔액 → 연구장학금으로만 이월 반영 • 석·박사간 변경 가능	• 당해연도 총 사업비(최초 사업비+이월액+발생이자)의 40~60% (유형별·분야별 기준) 이상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 자율적으로 변경 가능	• 별도 기준 없음 (비목간/세목간 변경 가능)	• 별도 기준 없음
산학협력전담 인력인건비			
교육과정개발비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 지원비			
국제화경비			
사업단 운영비	• 당해연도 최초 사업비의 10% 또는 3천만원 이내 유지 • 성과급 증액 불가	• 전년도 사업단 운영비 잔액을 초과하여 이월반영 불가 ※ 사업단 운영비 잔액을 타 비목으로 이월 가능하나, 타 비목 잔액을 사업단 운영비로 이월 불가 • 세목간 조정은 가능하나, 성과급은 전년도 성과급 잔액을 초과하여 이월 반영 불가 ※ 성과급 잔액을 타 세목으로 이월 반영은 가능(타 비·세목 잔액을 성과급으로 이월반영 불가)	• 당해연도 총 사업비(최초 사업비+이월액+발생이자)의 10% 또는 3천만원 이내 ※ 단, 전년도 사업단 운영비 잔액을 초과하여 이월반영 불가
간접비	• 당해연도 최초 사업비 5% 이내 • 간접비 증액 불가	• 전년도 간접비 잔액을 초과하여 이월반영 불가 ※ 타 비목 잔액을 간접비로 이월 불가	• 당해연도 총 사업비(최초 사업비+이월액+발생이자)의 5% 이내

**잠깐!! TIP!!****〈사업단 운영비 집행잔액 이월 및 편성 방법〉****1단계****당해연도 최초 사업비(전년도 사업비 이월액 미포함) 편성기준 준수**

→ 당해연도 최초 사업비의 10% 또는 3천만원 이내 편성

**2단계****전년도 사업단 운영비 잔액 이월 기준 준수**

→ 전년도 사업단 운영비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연도 사업단 운영비에 이월반영 불가

**3단계****당해연도 총 사업비(전년도 사업비 이월액 포함) 편성기준 준수**

→ 당해연도 총 사업비(당해연도 최초 사업비+전년도 이월액+당해연도 발생이자)의 10% 또는 3,000만 원 이내 편성 준수

예시 1) 당해연도 총 사업비 5.5억원(당해연도 최초 사업비 5억원, 전년도 사업비 이월액 5천만원), 전년도 사업비 이월액 중 사업단 운영비 잔액이 3백만원인 경우,

[1단계] 당해연도 최초 사업비 중 편성가능 사업단 운영비 (α) : 5천만원 이내[2단계] 전년도 사업단 운영비 잔액 이월 한도 (β) : 3백만원 이내[3단계] 당해연도 총 사업비 중 편성가능 사업단 운영비 (γ) : 5.5천만원 이내[최 중] $\gamma \geq \alpha + \beta$ 일 때, 편성가능 사업단 운영비 : 5.3천만원 이내($\alpha + \beta$)

예시 2) 당해연도 총 사업비 5.5억원(당해연도 최초 사업비 5억원, 전년도 사업비 이월액 5천만원), 전년도 사업비 이월액 중 사업단 운영비 잔액이 5백만원인 경우,

[1단계] 당해연도 최초 사업비 중 편성가능 사업단 운영비 (α) : 5천만원 이내[2단계] 전년도 사업단 운영비 잔액 이월 한도 (β) : 5백만원 이내[3단계] 당해연도 총 사업비 중 편성가능 사업단 운영비 (γ) : 5.5천만원 이내[최 중] $\gamma \geq \alpha + \beta$ 일 때, 편성가능 사업단 운영비 : 5.5천만원 이내($\alpha + \beta$)

예시 3) 당해연도 총 사업비 5.5억원(당해연도 최초 사업비 5억원, 전년도 사업비 이월액 5천만원), 전년도 사업비 이월액 중 사업단 운영비 잔액이 7백만원인 경우,

[1단계] 당해연도 최초 사업비 중 편성가능 사업단 운영비 (α) : 5천만원 이내[2단계] 전년도 사업단 운영비 잔액 이월 한도 (β) : 7백만원 이내[3단계] 당해연도 총 사업비 중 편성가능 사업단 운영비 (γ) : 5.5천만원 이내[최 중] $\gamma < \alpha + \beta$ 일 때, 편성가능 사업단 운영비 : 5.5천만원 이내 (γ)

* 사업단 운영비 이월가능 초과분(2백만원)은 타 비목으로 편성

※ 사업단 운영비 중 성과급은 전년도 해당 세목 집행잔액을 초과하여 이월반영 불가
(해당 잔액을 타 비(세)목으로 변경은 가능)



PART 2

사업비(예산) 집행 및 관리 업무 세부내용

2

사업비 집행계획 제출

- 매 사업연도마다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결정하여 통보한 사업비 범위에서 구체적인 당해연도 사업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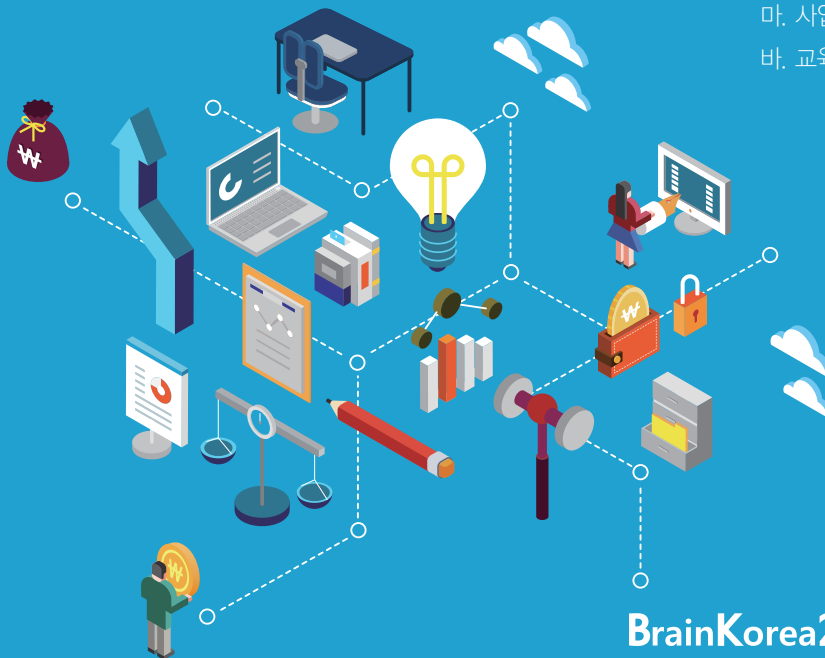
BK21 플러스 사업비 항목별 집행 기준

구 분		집행 기준	비 고
1.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 석사과정생 월 60만원 이상 • 박사과정생 월 100만원 이상	– 학기별, 분기별, 월별 등 지급기준에 대하여는 대학 및 사업단별로 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
2. 인건비	신진연구인력	• 월 250만원 이상	– 신진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 기준은 퇴직금 및 고용보험 등 법정부담금 중 개인부담금을 포함한 액수임 – 리서치펠로우에 대한 인건비는 관련 지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집행 가능 (최소기준 미적용)
	산학협력전담인력	• 주관대학 지급기준에 따름	– 전임교원 인건비로는 지급 불가
3. 교육과정 개발비		• 교재개발비 • 사례조사비 및 실험비 등	– 교육과정 개발 관련제반 경비를 편성·집행
4.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 지원비		• 논문 게재료 • 국내 학회, 세미나 참가비 • 소모성 재료비 • 창업, 취업지도, 산업체와의 산학협력 공동활동 경비	– 학회 연회비 등 참여교수 개인에 대한 경비 및 학회 후원금 성격의 지출 제한 – 기자재 및 장비 구매비 집행 불가
5. 국제화경비		• 국제학술회의 참가비용 •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의 장·단기 해외 연수 경비 • 해외학자 초빙 • 해외특허 출원(등록) 관련 비용 등	– 참석 여부 및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단기 해외연수 지양 – 해외학자 초빙·활용경비는 주관대학의 전문가 활용규정을 준용하여 수당, 체제비 및 항공료 등 지원(다만, 사업단의 사업 신청서에 따른 연차별 예산 운영계획에 사전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외 기관과 온라인 강의 및 수강에 대한 관리주체 및 체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집행 가능)

구 분		집행 기준	비 고
6. 사업단 여비	인건비	- BK21 플러스 사업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채용한 사업단 소속직원 인건비	- 퇴직금 포함
	성과급	- 사업 참여교수 중 우수 연구성과, 사업단 운영상 기여 등에 대한 성과급	- 자체 성과급 지급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 하되, 1인당 연 4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평가를 통하여 차등 지급) - 급여 성격의 성과급 활용 불가(정기적 지급 등)
	국내여비	- 사업 참여 인원의 국내 여비	- 해당 대학 여비규정 준용(단, 국·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해외 학술회의 참가 등에 필요한 국외 여비 등은 국제화경비에서 집행
	학술활동 지원비	- 전문가 초청 자문료·원고료 - 도서 등 문헌 구입비 - 국내·외 정보 수집비 등	- 참여 교수에 대한 정책 연구비, 교재 개발비, 자문료, 원고료 등의 지급 제한
	산업 재산권 출원 등록비	- 국내 특허 출원·등록비	
	일반수용비	-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 연구기자재 구입비 및 시설비, 상품권 등 선물 구입비 집행 제한
	회의 및 행사 개최비	- 회의비, 각종행사경비, 식대 등	- 사업참여교수 개인에게 수당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을 제한 - 회의비 집행시 회의록 등의 증빙자료 구비
	기 타	-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상기 비목으로 편성하기 곤란한 항목에 대하여는 사업단에서 적정한 집행 항목으로 편성하여 집행	
8. 간접비		• 대학(산학협력단 포함)의 사업단 총괄 관리를 위한 경비	- 간접비의 편성 비율은 연간 사업비 총액의 5%를 넘을 수 없음



18. 사업단(팀) 자체 운영규정 미흡
20. 예산비목별 부적정 집행 사례
 - 가. 대학원생연구장학금
 - 나. 신진연구인력지원비
 - 다.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활동지원비
 - 라. 국제화경비
 - 마. 사업단 운영비
 - 바. 교육과정개발비





PART 3

사업비 집행 관련 주요 위반사례

1

사업단(팀) 자체 운영규정 미흡



개요

- 사업단(팀)별 운영에 필요한 필수적인 사항, 사업비 집행 기준 등을 자체 운영규정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관련 규정

〈BK21 플러스 사업 관리운영 지침〉

제15조(사업단 자체 운영규정) ① 사업단의 장은 원활한 사업단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사업단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지원대학원생 선발 기준
 2. 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 기준
 3. 참여교수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평가기준 포함)
 4. 신진연구인력 또는 산학협력 전담인력 활용 지침
 5. 국제화경비 관련 국제학술회의 발표(디자인·영상분야의 경우 국제 전시회 출품 포함)·장기해외연수 대상 대학원생 선발 기준 및 해외학자 초빙에 관한 지침
 6.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 ② 대학의 장은 사업단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단 공통의 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8



알아두면 좋아요

자체 운영 규정 제정 절차

- 자체운영 규정은 내부 공식 절차를 거쳐 수립하여야 함
 - 사업단(팀) 운영 위원회 검토 및 내부 결재 등 관련 행정 행위를 반드시 수행

자체 운영 규정 항목

- 자체 운영 규정은 다음 항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지원대학원생 선발 기준
 - 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 기준
 - 참여교수에 대한 성과급 지급 기준 (평가기준 포함)
 - 신진연구인력 또는 산학협력 전담인력 활용 지침
 - 국제화경비 관련 국제학술회의 발표(디자인, 영상분야의 경우 국제 전시회 출품 포함), 장기해외연수 대상 대학원생 선발 기준 및 해외학자 초빙에 관한 지침
 -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부당집행사례

사례 1

지원대학원생 선발 기준 미흡

- ▶ ○○대학교 ○○사업단의 경우 자체 운영규정상 우수대학원생에 대한 장학금 추가 지원 가능 규정은 있으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은 마련하지 않고 장학금 차등 지급
- ▶ ○○대학교 사업단의 경우 자체 운영규정상 참여대학원생 중 지원대학원생 선발 비율을 명시하였으나, 명시된 비율이 BK21 플러스 사업 상위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사례 2

기여도 평가 기준 미흡

- ▶ ○○대학교 ○○사업단의 자체 운영규정 검토 결과, 사업단 구성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기여도 평가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 ○○대학교 ○○사업단의 경우 논문 1편당 ○○원이라는 형태로 성과급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 구성원간 기여율 평가 결과에 따른 합리적 성과급 배분이 어려운 경우
- ▶ 참여교수 및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 모두 사업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시 참여기간 내 발생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하여야 하나, ○○대학교 ○○사업단의 경우 그 이전 실적까지 포함할 수 있는 평가 기준으로 인센티브 지급

사례 3

인건비 및 수당 지급 기준 오류

- ▶ ○○대학교 ○○사업단의 경우 자체 운영규정상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지급액이 사업 훈령에 제시된 금액보다 적음
- ▶ 사업 훈령 상 사업단 내부 인원(참여교수 등)에게 수당 지급이 불가하나, ○○대학교 ○○사업단의 경우 자체 운영규정상 지급 가능 규정이 포함 됨



사례 4

국제 학술대회 발표 지원 기준 오류

- ▶ ○○대학교 ○○사업단의 경우 자체 운영규정상 참여교수의 단독 해외 출장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지도학생이 학술대회 발표 논문에 저자로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 동반 가능)
- ▶ ○○대학교 ○○사업단의 경우 자체 운영규정상 국제 학술 대회 발표 · 참가 지원에 대한 근거 및 기준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PART 3

사업비 집행 관련 주요 위반사례

사례 5

해외학자 초빙 지원 기준 오류

- ▶ ○○대학교 ○○사업단의 경우 해외학자 초빙에 따른 항공기 좌석 등급에 관하여 대학 규정이 아닌 사업단 운영위원회의 자체 심의에 따라 좌석 승급 가능한 것으로 자체 운영규정에 명시함



2

예산비목별 부적정 집행 사례

가. 대학원생연구장학금



부당집행 유형

- 지원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장학금 지원 단가 미만 지급
- 부적격대학원생에 대한 참여대학원생 등록 및 연구장학금 지급
 - 직장인 가입자: 직장인 가입자는 비전일제 대학원생으로 분류됨
 - 4대보험 가입자: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자는 비전일제 대학원생으로 분류됨
 - 명의대여자 자격증 등의 명의대여 자체가 불법이므로 참여 불가능
 - 연한초과자: 석사과정생은 입학 후 2년 이내, 박사과정생은 입학 후 4년 이내, 석·박사통합과정생은 입학 후 6년 이내만 참여 가능
 - 연구생등록 미등록자: 연한초과자가 아닌 학위과정 수료자는 연구생 등록이 된 경우에만 참여대학원생의 자격을 가짐
 - 휴학생 및 자퇴생: 휴학생, 자퇴생에 대한 참여대학원생 선발 및 연구장학금 지원 불가능
 - 시간강의 시수(학기당 6학점 이내)를 초과한 대학원생: 시간강의 경력증명서 등 강의시수 확인 필수
- 취업시점 이후기간에 대한 장학금 지원
 - 취업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월 연구장학금 일할계산
 - 자격증 대여, 위장취업, 사업장 등록자 등의 경우에도 비전일제 대학원생으로 판단
- 장기해외연수생 장학금 지급
 - 3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 해외연수기간 동안 연구장학금 지급 불가
- 4대 보험 증빙자료 미비
- 장학금 공동관리 등
 - 연구장학금을 지급 후 회수하여 미참여대학원생 지원, 연구실 공동경비 등으로 활용
 - 대학원생 개인통장을 타인(연구책임자 등)이 통합관리 하는 경우

● 미자격자 장학금 지원



개요

- BK21 플러스 사업 참여대학원생 자격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인원을 참여인력으로 선발하고 해당인원에게 장학금을 지급



관련 규정

〈BK21 플러스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제25조(참여대학원생 등) ①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중 전일제로 등록한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3.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BK21 플러스 사업 관리운영 지침〉

제11조(참여대학원생) ⑦ 대학의 장 또는 사업단의 장은 사업기간 동안 참여대학원생의 전일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참여대학원생의 4대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참여대학원생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격 및 비전일제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참여대학원생을 사업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전문기관 의 장은 부당하게 지급된 지원금을 즉시 환수할 수 있다.

〈BK21 플러스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제16조(대학원생 연구장학금)

④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은 국가재정지원사업에 의한 대학원생 지원비로 간주되므로,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 지원기준에 따라 국가재정에서 대학원생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 때 상한선 초과 여부는 타 국가재정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과 본 사업의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및 그 외의 성과급 등 인센티브 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⑤ 교내장학금 또는 기업 등 외부장학금과의 중복 수혜는 인정하나, 교육부 「글로벌 박사 양성사업」 등 BK21 플러스 사업과 이중 지급을 제한하는 사업으로부터 장학금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받는 학생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



PART 3

사업비 집행 관련 주요 위반사례



부당집행사례

사례 1

비참여교수의 지도학생 장학금 지급

- ▶ BK21 플러스 사업 참여교수가 아닌 비참여교수의 지도학생에게 연구장학금 지급(사업단 학과 소속 교수이지만 동 사업 비참여교수)
- ▶ 학기도중 지도교수를 변경한(비참여교수 → 참여교수) ○○○학생에게 지도교수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한 학기분 장학금을 전액 지급함



사례 2

참여교수의 타학과 지도학생 장학금 지급

- ▶ 글로벌 인재양성형 WCU 사업단과 특화전문인재양성사업단 중 신설예정학과 사업단이었던 경우, 협동과정 소속 (원 소속학과) 지도학생이 '17년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지급함

사례 3

연한초과자 장학금 지급

- ▶ ○○대학교 ○○사업단은 박사과정 9학기차인 ○○○(수료상태이나 졸업 이전인 학생임)을 참여대학원생으로 선발하여 한학기 장학금을 지급함
- ▶ ○○○ 수료학생의 연한 기산 시 수료 이후 연구생 등록을 하지 않은 기간을 포함하지 않아 참여대학원생 자격자로 착각하여 오지급함

사례 4

4대보험 가입자에게 장학금 지급

- ▶ ○○대학교 ○○사업단은 학기 도중 취업한 학생 ○○○에게 취업시점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학기분 장학금을 전액 지급함
- ▶ ○○대학교 ○○사업단은 사업자등록신고를 한 ○○○에게 등록시점 이후의 기간에 대한 장학금을 계속 지급함



사례 5

전문연구요원 훈련기간(4주) 중 연구장학금 지급

- ▶ ○○대학교 ○○사업단은 전문연구요원이자 BK21 플러스 사업 지원대학원생인 ○○○ 학생에게 4주 훈련으로 자리를 비운 기간에도 한달 분의 연구장학금 지급

사례 6

육아휴직자 및 공익근무요원에게 장학금 지급

- ▶ ○○대학교 ○○사업단은 무급 육아휴직자 및 공익근무요원을 참여대학원생으로 등록시키고 연구장학금 지급



사례 7

참여대학원생 자격 증빙자료 불비

- ▶ 참여대학원생임을 증빙하는 학적부, 4대보험 가입확인서 불비
- ▶ 외국인학생의 경우 4대보험가입확인서 대신 D-2비자로 대체가능하나, D-2비자가 아닌 타비자 구비
- ▶ 증빙서류 출력 일자가 사업 참여기간이 아님



사례 8

국가연구개발사업 대학원생 인건비 상한선 초과

- ▶ 타 국가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과 BK21 플러스 사업의 연구장학금을 합산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대학원생 인건비 상한액(석사 180만원/박사 250만원) 초과
- ▶ 국가연구개발사업 대학원생 인건비 지급 관리대장 불비



사례 9

BK21 플러스 사업과 이중지급을 제한하는 사업으로부터 장학금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

- ▶ ○○○ 학생에게 BK21 플러스 사업 연구장학금을 지급하면서 BK21 플러스 사업 장학금과 이중지급을 제한하는 사업(ex.글로벌박사양성사업 등)에서도 장학금을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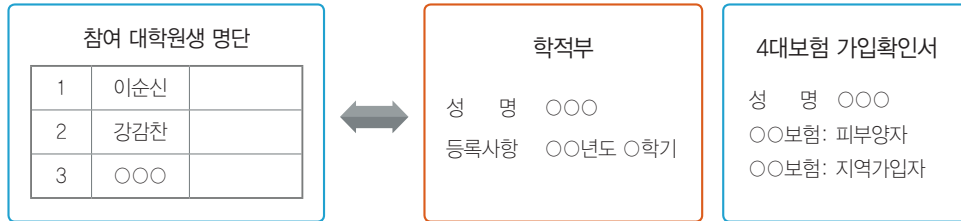
PART 3

사업비 집행 관련 주요 위반사례



예방책

- 매 학기 시작 후(4월 1일, 10월 1일 기준 권장) 참여대학원생 확정시 참여대학원생 리스트를 만들고 참여 대학생별 학적부 및 4대보험 가입확인서를 구비하여 해당 인원의 적격여부를 일괄확인(대학내 학생관리 부처와의 협조가 있다면 수월한 확인이 가능)



- 매 학기 시작 후 지원대학원생 선발 시, 학기도중 취업 또는 자퇴 등 변동사항이 생기는 경우, 해당사항이 사업단에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대학원생 서약서” 등을 통해 지원대학원생에게 사전 안내 필요
- 학기 마지막말(2월, 8월) 4대보험 가입여부를 재조사하여 학기내 지급 적절성 확인
 - ※ 4대보험가입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적절성 여부를 증명할 수 있음
- 4대보험 가입확인서류는 학기초에 수령한 이후 사후 변동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산학협력단에서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업단과의 원활한 정보전달이 필수적임
 - 일부는 학생의 증빙서류 제출지연으로 현장점검 시점 직전에 확인해보니 직장가입자로 확인되어 관련 금액을 환수한 경우가 있음
 - ※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인원의 경우 다른 증빙으로 대체 구비 가능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의 비자 Type(유학비자:D2) 제시 등
- 사업단 참여교수를 변경 또는 증원하는 경우, 해당 교수의 지도학생 또한 동 사업 참여자격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
- 참여대학원생의 지도교수 변경 시 변경되는 지도교수의 사업 참여 여부에 따라 해당 학생의 동 사업 참여자격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
- 참여대학원생이 시간강의를 하는 경우 강의시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자체적으로 시간강의 시간을 확인
 - ※ 최근 시간강의자의 복리증대를 위하여 4대보험 중 일부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 경우 6시간 이내 시간강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구비로 적격자임을 증명할 수 있음
- ‘사업 관리운영 지침 제11조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참여가 허용되는 아래의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관련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 및 확인서 구비 필요
 - 대학원생 본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 또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
 - 대학원생이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 가족에 대한 의료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

- 학업을 목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연속하여 무급휴직을 한 사람
- 주말에 한하여 생계형 단시간 근로를 한 사람
- 참여대학원생으로서 참여기간 중 사업단의 연구분야와 관련된 분야에 창업을 한 사람(단, 제13조에 따른 지원 대학원생으로의 선발은 불가)

■ 대학에 따라 신입생 입학 후 일정 학기가 지나야 지도교수가 정식 배정되는 사례가 있음

- 이 경우에도 해당 신입생들의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학적부 등 공식 서류 상으로 지도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해당 증빙이 확인 불가능할 경우 해당 학생은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 불가



SUMMARY

<대학원생연구장학금>

주요집행내역

- 석사(월 60만원 이상) 연구장학금
- 박사(월 100만원 이상) 연구장학금

※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를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음(석사 월 180만원, 박사 월 250만원)

지출시 확인사항

확인사항	관련서류	비고
• 대학원생의 학기등록 여부 - 휴학, 자퇴등 학기중 변동사항 발생시 해당 시점부터 참여대학원생 자격 상실	재학증명서, 학적부 등	수료생은 연구생등록
• 대학원생 입학후 연한 기준 준수 여부 - 석사 2년 이내, 박사 4년 이내, 통합 6년 이내	학적부	
• 대학원생의 전일제(미취업상태) 여부 - 취업시 해당일자부터 참여대학원생 자격 상실	4대보험가입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대학원생의 지도교수 사업참여 여부	학적부	
• 지원인력의 장기해외연수 여부		1개월 이상 장기연수시 장학금 지급제한
• 대학원생의 시간강의 시수 기준이내 여부 - 강의시수 주당 6학점 이내		



PART 3

사업비 집행 관련 주요 위반사례

나. 신진연구인력지원비



미자격자 인건비 지원

부당집행 유형

- 신진연구인력 채용 관련 증빙 미비
 - 임명과 관련한 계약서 및 발령공문 등의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 신진연구인력의 채용계약서상의 하자
 - 근로조건, 의무와 책임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하도록 명시하여 관련 법규에 부합하도록 작성되고 관리되어야 함
- 4대보험료 과다계상
 - 4대보험료 산정시 실제 청구된 보험료가 아닌 자체적으로 정한 비율을 사용하여 실제보다 과다계상 불가
- 근로계약 종료 후 인센티브 지급
 - 신진연구인력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 중 우수한 연구성과 도출을 사유로 인센티브 사후지급 불가
- 신진연구인력의 비전일제 근무
 - 소속 사업단(팀) 내에서 교육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대표이사 겸임 등의 비전일제 인정 불가
- 신진연구인력의 시간강의 학기당 6학점 초과
 - 박사후과정생은 학기당 학내·외 6학점 이내, 계약교수는 학기당 교외 6학점 이내 시간강의 허용
- 부적격자에 대한 신진연구인력 채용 및 인건비 지급
 - 계약교수는 박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의 교육 및 연구경력을 요하고 있으므로 박사학위 취득시점에 바로 계약교수로 채용 불가
- 최소 지급 기준 미준수
 - 최소 인건비 지급 기준인 월 250만원 미만의 급여를 책정한 경우
 - 퇴직금 및 4대보험 개인부담금 외에 4대보험 기관부담금까지 포함하여 250만원을 지급한 경우



개요

- 신진연구인력 자격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인원을 신진연구인력으로 선발하고 해당 인원에게 인건비를 지급



관련 규정

〈BK21 플러스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제26조(신진연구인력) ① 대학의 장은 사업단의 사업목적 달성 및 연구력 증진을 위하여 박사후과정생과 계약 교수(이하 “신진연구인력”이라 한다)를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계약교수의 채용 및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교수의 채용자격은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디자인·영상 및 예체능 분야의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단의 장은 전문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당집행사례

사례 1

박사학위 취득 전 고용하여 인건비 지급

- ▶ 2016년 3월 박사학위취득 예정자를 박사학위 취득시점 이전인 2016년 1월부터 고용하여 1월, 2월 인건비 지급
※ 박사학위 취득 예정서를 증빙서류로 구비

사례 2

미자격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

- ▶ ○○대학교 ○○사업단은 사업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을 신진연구인력으로 채용하고 수개월간 인건비를 지급함
- ▶ 계약교수는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의 교육 및 연구경력을 요하고 있으나, ○○대학교 ○○사업단은 박사학위자의 학위 취득시점에서 바로 해당인원을 계약교수로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급
- ▶ 박사 후 연구원으로서 최대 4년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교수로 다시 채용하여 인건비 지급

미자격자



예방책

- 신진연구인력 채용계약서를 관련 서류와 비교하여 계약의 적정성 검토

관련서류	확인사항	확인사항
채용계약서	계약기간	
학위증명서	박사학위 취득시점	박사학위취득일이 계약일 이전인지?
임용공문	발령시점	발령시점이 계약기간과 동일한지?



PART 3

사업비 집행 관련 주요 위반사례

4대보험 부적절 집행



개요

- 신진인력에게 지급된 급여에 비례하여 함께 지출되는 4대보험료와 관련하여 재원 및 집행액 산정시 행정오류 발생



관련 규정

〈BK21 플러스 사업 관리운영 지침〉

제17조(신진연구인력 인건비) ① 신진연구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퇴직금 및 4대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법정부담금 중 개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월 25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리서치 펠로우에 대해서는 본 지급단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건비 외에 4대 보험과 퇴직급여 총당금 기관부담금을 신진연구인력 지원비에 추가하여 계상할 수 있다.

28



참고 | 4대보험료 개요

노령·장애·사망
연금보험



질병과 부상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업무상의 재해
산업재해 보상보험



실업
고용보험

- ①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 함으로서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② 계약에 의하여 주당 일정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장 단독 또는 사업장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음



부당집행사례

사례 1

4대보험료 집행재원 부적절

- ▶ ○○대학교 ○○사업단은 대응자금에서 신진인력○○○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관련 4대보험료는 국고지원금에서 지출 처리함
(사업단 내 신진연구인력의 급여재원이 변경되었으나, 4대보험 재원은 조정하지 못함)

사례 2

4대보험료 과다계상

- ▶ ○○대학교 ○○사업단은 신진인력 ○○○에 대한 4대보험료 산정시 실제 청구된 보험료가 아닌 자체적으로 정한 비율을 사용하여 실제보다 과다 계상한 후 4대보험료 출금계좌로 송금함



예방책

- 신진인력 인건비의 재원을 가급적 일원화하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 관리(지적된 경우는 사업연도가 변경되면서 당해연도 관련 인건비 재원 부족으로 대응자금을 활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을 국고에서 일괄 처리로 발생한 사례임)
- 4대보험 지출결의시 공단 청구서에 의하여 정확하게 집행액 산정

인센티브 규정 초과



개요

- 대학 자체규정을 통하여 신진연구인력 인센티브 지급 등 세부사항을 정하였으나 사업단에서 해당 기준을 초과하여 인건비 지급



부당집행사례

사 례

인센티브 규정 초과

- ▶ ○○대학교는 신진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상한선을 ○○으로 두고 있으나 해당 대학 ○○사업단에서는 신진 연구인력 ○○에게 상한선보다 ○백만원을 초과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였음



예방책

- 인센티브 지급 결정을 위한 회의시 관련한 대학 자체규정 등 제한사항을 함께 자료에 명시하여 적절한 금액을 정하도록 함
 - 특히, 인센티브 등 개별적인 평가를 통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그 근거를 확인하고 지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



PART 3

사업비 집행 관련 주요 위반사례

● 퇴직금 처리 오류



개요

-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월 지급액의 1/13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하지 않았음에도 퇴직금 지급



관련 규정

〈BK21 플러스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17조(신진연구인력 인건비) ③ 제1항의 인건비 중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월 지급액의 1/13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하여 실제 퇴직시 지급한다. 이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부당집행사례

사 례

퇴직금 지급 규정 위반

- ▶ ○○대학교는 4차년도 사업기간에 대한 신진연구인력 퇴직금을 별도로 총당하지 않았음에도, 5차년도 사업비에서 퇴직금 지급
- ▶ ○○대학교는 1년 미만으로 근무한 신진연구인력에게 기여도 평가 증빙 없이, 인센티브 형태로 퇴직총당금을 지급함



예방책

- 퇴직금 관리를 위한 산학협력단 통장을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
 - 사업연도 종료 시 해당 사업연도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총당, 퇴직 시점에 일괄 지급하도록 함



SUMMARY

<신진연구인력지원비>

주요집행내역

- 박사후과정생 및 계약교수 월 250만원 이상 인건비

지출시 확인사항

확인사항	관련서류	비고
• 신진연구인력 발령시점 – 채용 시 대학의 발령이 있었으며 채용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	근로계약서, 임용공문	
• 신진연구인력 박사학위 취득 여부 – 박사후과정생은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며, 계약교수는 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경력 필요	근로계약서, 학위증명서	
• 4대보험료 지급의 적정성 여부 – 인건비 및 4대보험료 재원 일치 – 보험료 산정액이 청구서와 일치	지출결의서, 보험료청구서	
• 인센티브 지급의 적정성 – 인센티브 지급시점이 채용기간중인지 여부 확인 – 자체규정을 준수하여 인센티브 금액 산정	지급관련서류, 사업단자체규정	



PART 3

사업비 집행 관련 주요 위반사례

다.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활동지원비



● 논문게재료 부적절 집행



개요

- 논문게재료 집행 가능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비 집행



관련 규정

〈BK21 플러스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19조(연구활동 및 산학협력 지원비) ①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 지원비는 참여인력의 논문게재료, 국내학회 및 세미나 참가(일회성 참가비에 한하며, 학회 종신회비 등 참여교수 개인에 대한 경비, 학회 후원금 성격의 금액 집행 불가)비용, 실험실습 및 산학협력 활동 지원비로 사용 할 수 있다.



부당집행사례

사 례

미자격자에 대한 논문게재료 지급

- ▶ ○○대학교 ○○사업단은 참여대학원생이 졸업후 Accept된 참여당시 작성 논문에 대한 논문게재료를 지원함
- ▶ ○○대학교 ○○사업단은 BK21 플러스 사업 참여인력이 아닌 학생 및 교수에 대한 논문게재료 지급

미자격자



예방책

- 논문이 게재된 시점에서의 참여여부 확인한 후, 논문게재료 지급

● 기자재(집행제한항목) 구입



개요

- 집행제한항목으로 규정된 기자재 또는 기자재의 일부, 범용성 소프트웨어 등을 구입하여 관련 집행액을 지적받음



관련 규정

〈BK21 플러스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19조(연구활동 및 산학협력 지원비) ② 실험실습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단의 연구 수행과 관련한 각종 시약 및 소모성 재료비,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S/W구입비 등을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기자재 및 시설비, 장비 구매 및 유지 보수비, 범용성 소프트웨어 구입비로는 집행할 수 없다.



부당집행사례

사례 1

연구기자재 등 구입

- ▶ ○○대학교 ○○사업단은 사업단 연구 개발에 필요한 기자재로 국고에서 스피커, 앰프 등을 구입

국고로 구입



사례 2

장비 부품 및 범용성 프로그램 구입

- ▶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컴퓨터 부품 구입(특히 컴퓨터 및 그 부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범용성 장비로 구분되어 일반 연구개발사업에서의 구입도 제한됨)

사례 3

범용성 프로그램 구입

- ▶ ○○대학교 ○○사업단은 연구활동 및 산학 협력 지원비를 활용하여 범용성 소프트웨어 5 copy를 구입함. 해당 사업단에서는 본 소프트웨어가 학생들의 실무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나 소프트웨어 구입 목적이 BK21 플러스 사업과 직접 연관성이 없고 해당 소프트웨어 성격이 범용성 성격으로 파악됨



PART 3

사업비 집행 관련 주요 위반사례



| 참고 | 연구기자재 및 재료비 정의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연구수행을 위하여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 재료비 : 내구년수가 1년 이하인 시약, 소모성 부품 등의 구입비 및 사용료



예방책

- 연구에 필요한 장비가 있을 경우 대학 등을 통하여 관련 기자재를 지원받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관련된 연구의 연구비 계정등을 활용하여 집행
- 재료비 지출시 사전에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고 계획에 따라 적절한 규모의 재료를 구입



알아두면 좋아요

연구활동비 집행 관련 최근 규정 개정 사항

기 존

논문 게재료, 국내 학회·세미나 참가 등의 연구 활동비 사업단 운영비 내에서 집행



개 정

사업단 운영비 비목 내의 논문 게재료, 국내학회·세미나 참가 비용을 '실험실습 및 산학협력활동 지원비' 비목으로 통합하고, 해당 비목의 지원 내역을 총괄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 지원비'로 비목 명 변경

라. 국제화경비



부자격자 지원



개요

- 사업규정상 국제화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경비를 지원함



관련 규정

〈BK21 플러스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20조(국제화경비) ① 국제화경비는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 전담인력을 포함한 참여대학원생의 해외학회 참가, 대학원생의 해외 인턴십, 해외학자 초빙, 해외 장·단기 연수 경비, 국외 및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 개최경비, 해외특허출원 및 등록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해외 연수와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원생을 동반하지 않은 참여교수의 단독 해외 연수 경비는 집행할 수 없다.



부당집행사례

사례 1

참여대학원생 미자격자 경비 지원

- ▶ 1학기 기간동안만 참여대학원생이었던 ○○○에게 2학기에 있었던 국제학회 등록비 및 관련 출장비를 지원함
- ▶ 참여대학원생중 취업(4대보험가입)으로 인하여 자격을 상실한 ○○○에게 국제화경비를 지원
- ▶ 비참여교수(사업단 학과 소속 교수이나 동 사업 비참여교수)의 지도학생에게 국제화경비 지원

사례 2

참여교수 단독 국제학회 참석 및 지원

- ▶ ○○대학교 ○○사업단은 참여교수가 단독으로 논문발표를 목적으로 국제학회에 참석하여 학회등록비 및 관련 출장비를 지원받음
- ▶ ○○대학교 ○○사업단 참여교수가 비참여대학원생과 함께 국제학회에 참석하여 참여교수는 BK21 플러스 사업비에서, 대학원생은 타연구비에서 관련 경비를 지원받음





PART 3

사업비 집행 관련 주요 위반사례

사례 3

지도교수가 아닌 참여교수의 국제학회 참석 및 지원

- ▶ ○○대학교 ○○사업단은 국제학회에 발표논문 저자로서 참여하는 학생의 지도교수가 아닌 단순 참여교수의 국제학회 참석 경비를 지원함



예방책

- 국제학회 참가 신청시 참여대학원생 자격을 갖추었으나 졸업, 취업 등의 사유로 학회참가 시점에 자격을 상실한 경우 관련 경비가 국고지원금에서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
 - 특히, 사업 차년도간에 걸쳐진 학술대회, 다음 차년도 기간에 개최되는 학술대회 관련 항공료 및 학회 사전등록 경비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화하여 집행 필요(체재비는 사전집행 가능 대상 아님)
- 참여교수는 지도학생이 본 사업의 일환으로 국제학술대회에 발표논문의 저자로서 참여하는 경우 인솔자로서만 참여 가능함에 유의

● 해외연수 기준에 맞지 않는 해외출장비 지원



개요

- BK21 플러스 사업 단기해외연수 기준(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 등)에 맞지 않는 단순 워크숍 등 참석의 사유로 해외출장비를 국고로 지급



관련 규정

〈BK21 플러스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20조(국제화경비) ③ 제2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연수기간 15일 이내의 단기해외연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해외기관으로의 단기 연수는 참여대학원생이 MOU체결 기관 등에서 실시되는 공식 교육과정 참여, 현지 연구 수행 시 지원이 가능하며, 참여교수는 연수 대상 학생의 지도교수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8. 예산운영계획서에 기재된 벤치마킹 대학과의 워크숍은 연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

부당집행사례

사례 1

해외대학 현장 방문 등

- ▶ 해외 대학 연구현장 방문 목적으로 해외 출장비 지급
- ▶ 정보수집을 위한 해외대학 도서관 방문 목적으로 해외 출장비 지급
- ▶ 연수과정 참여를 위한 목적으로 해외출장비 지급
- ▶ 단순 연구 유관기관 방문 일정만으로 이루어진 사업단 자체 참여대학원생 해외 연수 프로그램 추진
- ▶ 해외기관과 MOU 체결, 해외 우수학생 모집 등을 위한 해외 출장



사례 2

국제학술대회 출장시 학회 외 일정에 대한 사업비 지원

- ▶ 해외 국제학술대회 참석 일정 이외에 BK21 플러스와 무관한 일정(GRL관련 회의 및 우수연구기관 방문 등)에 대한 체재비 등이 지원됨

예방책

- 학회 지원기준 부합여부는 내부서류를 통하여 출장 신청부서에서 확인하고 지원부서가 이에 근거하여 지출될 수 있도록 행정을 간소화할 수 있음

예) 학회참가국, 발표논문수, 국외논문비율, 참가자 발표 논문명 등을 내부서류를 통하여 기재하고 사업단장이 확인하여 출장신청서와 함께 제출

서 식 명	
사업단장 ○○○	

학회명:	발표논문수:
참가국수:	국외논문비율:
참가자명:	논문명:

● 사전계획 및 결과보고서 누락 또는 미흡

개요

- 국고로 동 사업 참여인력의 해외출장을 지원하였으나, 출장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구비하지 않음

관련 규정

〈BK21 플러스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20조(국제화경비) ② 해외 연수와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대학 자체규정에 따른 증빙서류 외에 일자별/인원별(참여교수 동반 시 해당 교수 포함) 상세 계획 및 활동 내역이 포함된 연수계획서, 연수결과보고서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점검 결과 구비된 연수계획서 및 연구결과 보고서 등이 미흡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



PART 3

사업비 집행 관련 주요 위반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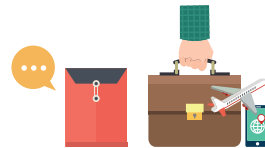


부당집행사례

사례 1

사전 계획되지 않은 장·단기 연수 경비 집행

- ▶ ○○대학교 ○○사업단은 예산운영계획서 및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장·단기 연수경비를 사업비에서 집행
- ▶ MOU체결 및 공식 초청장을 구비하지 않고 해외기관으로의 장·단기연수 경비 집행



사례 2

해외출장 관련 결과보고서 미제출

- ▶ ○○대학교 ○○사업단은 해외출장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음



예방책

- 산학협력단에서는 해외출장 목적, 세부일정 및 활동내역, 수행 연구내역, 현 연구에의 활용 계획 등을 포함한 해외출장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공통양식을 마련하여 소속 사업단(팀)에 안내
- 벤치마킹 대학과의 워크숍 비용은 예산운영계획서에 기재된 경우 연 1회에 한하여 집행 가능
- 해외기관으로의 단기 연수는 MOU체결기관 등에서 실시, MOU 체결이 어려운 경우 해당기관 책임자의 명의 초청장(공식 레터) 구비

● 해외출장 지원단가 과다계상



개요

- 해외출장비 산정액이 학회기간 이외의 기간이 포함되는 등의 사유로 규정상 금액보다 초과 지급됨



관련 규정

〈BK21 플러스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20조(국제화경비) ② 해외 연수와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여비(항공료, 체재비 등)는 대학 여비 기준(국·공립 대학의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이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 및 집행한다. 다만, 대학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행을 위해 산학협력단 또는 사업단에서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 및 집행할 수는 없다.

**부당집행사례****사례 1****참여인력 출장비 과다산정**

- ▶ ○○대학교 ○○사업단은 참여인력의 출장비 산정시 학회 참석기간이 아닌 기간도 산정기간에 포함시킴으로서 출장비를 과다 산정하여 지급함
- ▶ ○○대학교 ○○사업단에서 장기연수생으로 선발된 참여대학원생 ○○가 당초 일정보다 조기에 연수활동이 종료되었으나 당초 계획대로 지급된 금액에 대한 별도 처리가 없어 체재비가 과다 지급되었음
- ▶ ○○대학교 ○○사업단은 대학 여비규정이 아닌 타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출장비 ○○천원을 초과 지급함
- ▶ ○○대학교 ○○사업단은 참여교수의 비자발급 수수료를 국고에서 지원

사례 2**체재비 중복지급**

- ▶ ○○대학교 ○○사업단의 참여대학원생이 장기해외연수로 이미 A국에서 체류 중인 가운데, A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 참가 관련 체재비를 장기연수 지원비와 중복하여 지급함

**POINT**

- 출장기간은 학회 개최기간 및 학회지까지의 이동을 고려한 일자를 포함(단, 학회기간 이후 타업무를 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 부득이한 경우 학회 일정 전후 1일간의 체재비에 대해서만 인정(학회일정 상 전날 도착, 종료 후 다음날 출국)하며, 기내박이 있는 경우 1박에 대한 숙박비는 제외

**예방책**

- 출장비 산정시 공통양식등을 통해 사업단 자체적으로 학회개최일, 등록비 중 식비 포함여부, 기내식 지급횟수 등을 확인하고 이에 근거하여 출장비를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행정 표준화를 통한 검증의 편이성 제고)

| 예시 | 내부서류 중 출장비 산정내역

학회개최기간: 00.00.~00.00. (0박0일)

구분	계산근거	금액	비고
숙박비	0일×(지급기준)	000	기내박 1일 제외
식 비	0일×(지급기준)	000	기내식 2일 제외
일 비	0일×(지급기준)	000	
합 계		000	



PART 3

사업비 집행 관련 주요 위반사례

- 국제학회 참가시 학회 종료이후 학회개최지 인근대학의 연구자들과의 회의를 갖는 등 개별적인 일정을 갖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활동은 BK21 플러스 사업에서는 지원되지 못하는 바 별도의 출장비 지원 없이 활동함이 적절(단, 타 R&D과제의 활동과 연관되는 경우 해당 경비에 대한 타재원 지원 검토 가능)
- 대학은 반드시 해당 대학 여비 규정(단, 국공립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수하여 적절한 금액이 지급되고 사후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 해외석학 초빙경비 부적정 집행



개요

- 해외석학 초빙시 지원 단가를 과다 계상함
- 해외석학 초빙 관련 사전 계획 승인 절차 및 결과보고 절차가 미흡함

40



관련 규정

〈BK21 플러스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20조(국제화경비) ⑤ 해외학자의 초빙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학자의 국내 실 입국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으며, 초빙 수당 이외에 항공료 등 여비, 체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때 지급 기준은 대학의 자체 규정에 따른다.
2. 해외학자 초빙은 그 목적 및 계획, 해당 학자 이력사항 등을 포함한 사전 기간 후 시행하며, 활용 완료 후 세부 활용내역, 관련 증빙 등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해외학자에게 지급되는 경비는 강의 및 세미나 발표 등의 강사료, 전문가 활용비로 집행하여야 하며, 그 외에 출장비 산정 기준의 초과분 또는 관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비용 등은 사업비에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4. 해외학자 강사료는 대학 자체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적용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원천징수 후 전산환 등을 이용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다. 대학 자체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집행하기 전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5. 제1호에도 불구하고 사업단의 사업 신청서 또는 연차별 예산 운영계획에 사전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외 기관과 온라인 강의 및 수강에 대한 관리 주체 및 체계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학자의 원격 화상강의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6. 해외학자 초빙·활용과 관련한 경비는 실제 활용 기간을 고려하여 과도한 예산지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과도한 지급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부당집행사례

사례 1

해외석학 초빙 관련 증빙서류 미비

- ▶ 해외학자 초빙 활용과 관련하여 증빙서류(초빙목적, 내용, 초청학사 이력사항 등), 결과보고서 누락



증빙서류 미비

사례 2

해외학자 초빙비 과다계상

- ▶ 해외학자의 국내 실 입국 기간에 대해서만 해외학자 초빙비 지원이 가능하나, ○○대학교 ○○사업단은 해외 학자를 실제 초빙하지 않고, 화상으로 강의를 진행한 후 강사로 지급
- ▶ 해외학자의 체재비(숙박비 등) 산정시 실제 강의일자가 아닌 훨씬 이전 기간부터 또는 훨씬 이후 기간까지 산정 기간에 포함시킴으로서 출장비를 과다 산정하여 지급함
- ▶ ○○대학교 ○○사업단은 해외학자에게 강사로 외에 기념품을 국고로 구입하여 증정
- ▶ ○○대학교 ○○사업단은 해외석학 초빙 대상 외 인원에 대한 조식비 지원

사례 3

해외학자 자격기준 미준수

- ▶ ○○대학교 ○○사업단은 해외기업 한국지사에서 연구 기술분야 총괄매니저로 연구 업무 수행 중인 분을 해외석학으로 초빙함



총괄매니저

예방책

- 해외석학 초빙 시 관련 목적, 세부 초빙일정, 활동계획, 기대효과, 해당 학자의 전문성 등을 입증 가능한 이력서 등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사전 계획 승인 후 집행토록 유도 필요
- 집행 후에는 세부 활동내역 및 관련 증빙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확인하고 공식 일정 외에 지원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
- 해외석학 초빙 시, 학자의 저명도, 전문성 및 해외학자 초빙의 목적과 그에 따른 기대효과를 고려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해외석학은 해외 소재 대학, 연구소, 기업체 소속의 교수 또는 연구원이어야 함



PART 3

사업비 집행 관련 주요 위반사례



SUMMARY

<국제화경비>

주요집행내역

- 참여인력의 국제학술활동 관련 경비(등록비, 여비, 석학강사료)
 - 국제학회 참석경비
 - 장기연수경비, 해외인턴십경비
 - 해외석학 초빙경비

지출시 확인사항

확인사항	관련서류	비고
• 참여교수 단독의 국제학술활동 지원 제한 - 참여교수는 반드시 지도대학원생을 동반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지출결의서	
• 미자격자 국제학술활동 지원 불가 - 출장시점기준 졸업생, 취업생이 아닌 지 등을 확인	참여인력명단 (참여기간확인)	
• 출장비 지급액 적정성(부당사례 해당 여부) - 출장비 산정시 출장기간 과다계상 또는 대학규정 미준수 - 학회등록비에 식대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식비 전액 지급 - 조기귀국시 과다 지급된 금액의 미반납	대학여비규정등 지출결의서, 결과보고서	

마. 사업단 운영비



● 국내여비 부담집행



개요

- 국내출장비 산정액이 규정상 실제 지급될 금액보다 많아 초과하여 지급되어 해당 금액이 지적됨, BK21 플러스 사업 참여 자격을 상실한 인원 등 부적격자에게 지원함
- 국내출장비 산정액이 규정상 실제 지급될 금액보다 많아 초과하여 지급되어 해당 금액이 지적됨



관련 규정

〈BK21 플러스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21조(사업단 운영비) ② 사업단 운영비는 인건비, 성과급, 국내여비, 학술활동지원비, 산업재산권출원등록비, 일반수용비, 회의 및 행사개최비, 기타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며, 각각에 따른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국내여비는 해당 대학 여비 규정(단, 국·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사업 참여인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부당집행사례

사례 1

비참여인력 여비 지급

- ▶ ○○대학교 ○○사업단은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대학원생에게 학회 참가여비 ○○만원을 지원함
- ▶ ○○대학교 ○○사업단은 석사학위를 졸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에게 학회 참가여비 ○○만원을 지원함



사례 2

출장비 과다산정

- ▶ ○○대학교 ○○사업단은 참여인력의 출장비 산정시 실제 출장일보다 과다하게 산정함으로써 출장비를 과다 수령하였음
- ▶ ○○대학교 ○○사업단은 출장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일찍 종료됨에 따라 조기에 돌아왔으나 기지급받은 출장비에 대한 별도 반납처리를 수행하지 않았음
- ▶ ○○대학교 ○○사업단에서 참여인력의 학회참석과 관련하여 숙박비를 실비와 정액으로 이중 청구함으로써 ○○만원의 출장비를 과다 지급받았음



PART 3

사업비 집행 관련 주요 위반사례

사례 3

학회등록비에 식대 등 포함

- ▶ ○○대학교 ○○사업단은 참여인력 ○○의 국내학회 참석과 관련하여 학회등록비 및 출장비(식비 전액)를 지원하였는데 학회등록비에 식대 등이 포함되어 식비를 이중으로 지원받음



사례 4

과제수행과 연관성 없는 여비 집행

- ▶ ○○대학교 ○○사업단은 신입교수 초빙, 신입생 모집 방안, 교육과정 개편 등의 회의 비용을 BK21 플러스 사업비에서 집행함
- ▶ ○○대학교 ○○사업단은 참여교수 연구비 수주 실적 확대를 위하여 타 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관련 출장 여비 집행
- ▶ 타 대학의 우수 학부생 유치 및 타 과제 협약과 관련한 출장 비용 지출



예방책

- 참여대학원생 등 참여인력 적격여부 검증시 입학후 지원연차 등 자격이 규정에서 정한 기준 범위내인지 여부를 확인
- 대학실무자는 사업년도별 참여인력 명단(최근본)을 구비하고 지출시 해당 인원으로만 경비가 지출되고 있는지 검증
 - ※ 사업비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에 대해서 집행되어야 하므로 BK21 플러스 사업 미자격자는 해당 인원이 참여하고 있는 연구의 연구비 등에서 집행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 출장비 산정시 공통양식등을 통해 사업단에서 출장일, 학회등록비중 식비 포함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이에 근거하여 출장비를 산정하여 지급(행정의 표준화)
- 해당 대학 여비 규정(단, 국공립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수하여 적절한 금액이 지급되고 사후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 당초 출장일정보다 실제 출장일이 짧은 경우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기 지원받은 금액에 대한 반납처리 필요 (산학협력단에서는 해당 절차 안내)

● 학술활동지원비 부당집행



개요

- 사업단 내의 참여인력에게 자문료 지급, 연구수행과 관련없는 산단 비치용 잡지책을 구입하여 관련 집행액을 지적 받음
- 전문가 자문료 지급 등과 관련하여 사업 무관 경비 집행 및 지급단가 미준수 사례 발생



관련 규정

〈BK21 플러스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21조(사업단 운영비) ② 사업단 운영비는 인건비, 성과급, 국내여비, 학술활동지원비, 산업재산권출원등록비, 일반수용비, 회의 및 행사개최비, 기타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며, 각각에 따른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학술활동지원비는 전문가 초청 자문료, 도서 등 문헌구입비, 국내·외 정보수집비로 집행할 수 있다.
 - 전문가 초청 자문료는 원고료, 강사로 및 위원 수당 등으로 대학 자체 지급기준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사업단 내의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 전담인력에 대한 번역료, 자문료 및 원고료 등은 지급할 수 없다. (동일 학과(학부제 운영대학의 경우 동일 학부) 소속 전임 및 겸임교수,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 전담 인력에게도 지급할 수 없다.)
 - 사업 관련 문헌을 구입한 경우에는 대학에서 관리대장 등을 비치하여 검수 및 관리하여야 하고, 사업이 종료된 후에 해당 도서는 전부 대학에 귀속하여야 한다.
 - 사업 및 연구수행과 무관한 신문 등 정기간행물 구입, 국외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한 해외 출장 경비 등은 집행할 수 없다.



부당집행사례

사례 1

사업단 내부인에게 자문료 지급

- ▶ ○○대학교 ○○사업단은 사업단 참여교수들에게 자문료 지급

사례 2

신문 등 정기간행물 구입

- ▶ ○○대학교 ○○사업단은 사업 및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산단 비치용 잡지책 및 도서 구입





PART 3

사업비 집행 관련 주요 위반사례

사례 3

전문가 자문료 부적정 집행

- ▶ ○○대학교 ○○사업단은 강사료의 경우, 조교수는 3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40만원을 지급함
- ▶ ○○대학교 ○○사업단은 BK21 플러스 사업과 무관한 학회 워크숍 초청연사 연사료를 지급함
- ▶ 내부결재문서 및 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확인서 등의 사유서를 구비하지 않고 주말, 공휴일에 전문가 자문료를 집행함
- ▶ 수혜대상이 참여대학원생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위한 행사에 초청된 전문가 자문료를 BK21 플러스 사업비에서 집행

POINT



- 기존 학술활동지원비에서 집행되었던 논문 게재료 및 국내학회·세미나 참가비가 규정 개정(2017.2) 이후,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 지원비” 비목으로 통합

● 일반수용비 부당집행

46



개요

- 집행제한항목으로 규정된 기자재 또는 기자재의 일부를 구입하여 관련 집행액을 지적받음
- 사업과 무관한 홍보성 경비를 집행하거나, 간접비에서 지원 가능한 물품을 구입하여 지적받음



관련 규정

〈BK21 플러스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1조(사업비의 집행) ② 사업비는 토지 및 건물매입, 시설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

구 분	집행 기준	비 고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연구기자재 구입비 및 시설비, 상품권 등 선물 구입비 집행 제한

〈BK21 플러스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21조(사업단 운영비) ② 사업단 운영비는 인건비, 성과급, 국내여비, 학술활동지원비, 산업재산권출원등록비, 일반수용비, 회의 및 행사개최비, 기타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며, 각각에 따른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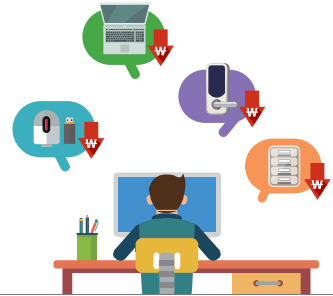
6. 일반수용비는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홈페이지 개설, 플래카드, 브로슈어 제작 등 포함),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BK21 플러스 사업과 무관한 물품 구입 비용, 홍보 기념용품 제작 비용, 언론기사 게재료 및 광고(신입생 모집 공고 등 포함) 비용 등은 집행할 수 없다.

부당집행사례

사례 1

연구기자재 등 구입

- ▶ ○○대학교 ○○사업단은 사업단 행정을 위한 컴퓨터를 구입
- ▶ ○○대학교 ○○사업단은 사무실 컴퓨터 수리비용을 국고에서 지출
- ▶ ○○대학교 ○○사업단은 공용컴퓨터 성능향상을 위해 필요한 CPU, RAM 등 부속 및 외부기기(외장하드 디스크) 등을 구입함
- ▶ ○○대학교 ○○사업단은 연구수행을 위하여 실험기자재의 부속 및 책꽂이, 사무실 번호키(도어록) 등을 구입
- ▶ ○○대학교 ○○사업단은 부기보드 등 장비를 사업비로 구입함



사례 2

홍보기념품 제작 및 홍보경비 등 부적정 집행

- ▶ ○○대학교 ○○사업단은 세미나 개최시 참석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사업단 홍보용 기념품을 제작하고 개별 선물 포장 비용을 사업비에서 지출함
- ▶ ○○대학교 ○○사업단은 사업단 홍보 목적으로 언론사 기사 게재를 위한 비용을 국고에서 집행함
- ▶ ○○대학교 ○○사업단은 신입생 모집 공고비를 홍보비로 집행함
- ▶ BK21 플러스 사업과 무관한 학회 워크숍 개최 관련 리플렛 인쇄비를 지원함

47

사례 3

간접비성 경비를 일반수용비로 지출

- ▶ ○○대학교 ○○사업단은 실험실습비 현판 및 안내표지판 등을 구입
- ▶ ○○대학교 ○○사업단은 학과 랩실 냉난방기 전자소모품 교체비용을 집행
- ▶ ○○대학교 ○○사업단은 연구에 참가하는 피험자 모집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사이트 호스트 비용 집행
- ▶ ○○대학교 ○○사업단은 업무처리를 위한 복사기 임대료(범용성 대여료)를 사업비에서 집행
- ▶ ○○대학교 ○○사업단은 참여인력 명함제작 비용을 일반수용비에서 집행

사례 4

사무용품 구입비 부적정 집행

- ▶ ○○대학교 ○○사업단은 과제 종료일에 임박하여 사무용품 대량 구매
- ▶ ○○대학교 ○○사업단은 사무용품 구입시 다과경비를 포함함





PART 3

사업비 집행 관련 주요 위반사례

사례 5

학과 및 참여교수 홈페이지 용역 지출

- ▶ ○○대학교 ○○사업단은 사업단 홈페이지 수정 시 학과 홈페이지 개선 사항을 계약에 포함시켜 관련 경비를 지출하였음
- ▶ ○○대학교 ○○사업단은 사업단 홈페이지 수정 시 학과내 참여교수 홈페이지 제작을 계약에 포함시켜 ○천만원의 경비를 지출하였음



회의 및 행사개최비 부당집행



개요

- 회의비 집행과 관련하여 집행항목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적정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 집행



관련 규정

〈BK21 플러스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21조(사업단 운영비) ② 사업단 운영비는 인건비, 성과급, 국내여비, 학술활동지원비, 산업재산권출원등록비, 일반수용비, 회의 및 행사개최비, 기타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며, 각각에 따른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회의 및 행사개최비는 회의비, 각종 행사경비 등으로 사용된다.

- 사업단에서 개최하는 회의 및 각종 행사의 회의비, 다과비 등을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행사 개최에 대한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연구비 카드를 통해 집행하며, 행사 일시·장소·참석자 및 회의내용 기재한 회의록을 구비하여야 한다.
- 사업단 내부 구성원에게는 회의 수당 등의 개인적 경비를 지급할 수 없으며, 행사와 관련 없는 식대, 행사와 관련이 있더라도 행사 당 1회를 초과하는 식대는 집행할 수 없다. 다만, 종일 행사 등 행사기간 및 일정 상 부득이한 경우 행사의 목적, 참석대상, 세부일정, 소요 경비 등을 포함한 사전기안(사전 내부결재 필수)에 따라 추가 식대 집행이 가능하다.
- 주말 및 자정(24:00) 이후에는 회의비를 지출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련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단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할 수 있다.

**회의비를 집행할 수 없는 부당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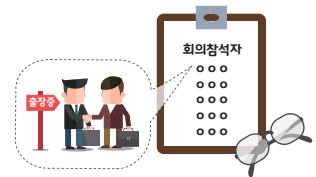
- 회의장소와 전혀 다른 장소에서 회의비를 집행하여 그 사실관계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 출장 중인 참여교수 등을 회의록상의 참석자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보다 많은 금액의 회의비를 청구하는 경우
- 동일한 일시에 회의비를 수차례로 나누어 결제하는 방법으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회의비를 청구하는 경우
- 식당 장부 등을 방법을 사용하여 식대를 일정 금액 선결제한 후 해당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
- 간이영수증 등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증빙으로 회의비를 청구하는 경우

**부당집행사례****사례 1****회의일자 및 장소 불일치**

- ▶ ○○대학교 ○○사업단은 실제 회의일이 아닌 다른 일자에 회의비를 집행하였음
- ▶ ○○대학교 ○○사업단은 회의가 교내에서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동거리가 학교에서 1시간 이상되는 장소에서 회의비를 집행하였을 뿐 아니라 회의비 집행시간이 회의시간과 거의 유사하였음
- ▶ 교내식당 등에서 경비를 집행하면서 법인카드 소지자 부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결제를 지연

사례 2**출장중인 참여인력에 대한 회의비 집행**

- ▶ ○○대학교 ○○사업단은 출장중인 교수를 회의참석자로 포함시키고 이에 근거하여 회의비를 집행함

**사례 3****회의록 누락**

- ▶ ○○대학교 ○○사업단은 회의비 집행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회의개최를 위한 경비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음

사례 4**회의비 초과지출**

- ▶ ○○대학교 ○○사업단은 해당 대학 회의비 집행 기준을 초과하여 집행 (해당 대학의 회의비 집행 기준은 1인당 3만원이나, 10명이 참석한 회의에 500,000원 이상 집행)

회의비 집행 기준



회의비 집행액



PART 3

사업비 집행 관련 주요 위반사례

사례 5

회의비 집행 부적절

- ▶ ○○대학교 ○○사업단은 식사시 함께 집행할 수 없는 항목인 주류를 함께 주문하고 이를 결제하였음
- ▶ ○○대학교 ○○사업단은 교내에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면서 학생식당에서 1회에 식사를 하기에는 과다한 양을 식권을 매번 구입하고 결제함으로써 석식용 식권을 사전구매
 - ※ 식당에 장부를 마련해두고 정기적으로 결제한 사례도 있음
- ▶ ○○대학교 ○○사업단은 사업내용과 무관한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식대를 본 사업비로 집행함



사례 6

사업단 주최(주관)가 아닌 행사 지원

- ▶ ○○대학교 ○○사업단은 참여대학원생 소속 단과대학에서 주최하는 영어발표경진대회(학부, 대학원생 모두 참여 가능) 지원 비용 집행

사례 7

비수혜대상 지원

- ▶ ○○대학교 ○○사업팀은 연구성과 공유 및 교류차원에서 MOU를 체결한 해외 대학 교수님과 학생들을 초청한 행사를 진행하면서 해당 대학의 교수님 및 학생들에 대한 교육경비 및 체재비를 행사개최비에서 집행



예방책

- 사업단에서 회의록 작성시 전화차 회의록 파일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작성시 이미 기록되어 있는 정보를 반드시 업데이트하거나 작성된 사항이 없는 기본 폼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실제와 다른 회의록 작성을 예방
- 회의비는 반드시 회의가 개최된 일자에 지출
- 영수증에 회의용 물품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품목(예: 주류 등)이 포함되었는지 지출결의서 확인시 점검
- 회의비 자체 지출기준에 근거하여 회의당 예산을 수립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집행

● 행정전담인력인건비



개요

- 사업과 무관한 인력에게 사업비를 지급하는 등의 사례 발생



관련 규정

〈BK21 플러스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21조(사업단 운영비) ② 사업단 운영비는 인건비, 성과급, 국내여비, 학술활동지원비, 산업재산권출원등록비, 일반수용비, 회의 및 행사개최비, 기타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며, 각각에 따른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건비는 사업단 소속 업무전담 행정직원의 인건비로 사용되며, 퇴직금 및 인건비, 4대 보험 관련 경비 등을 집행할 수 있다.

51



부당집행사례

사례 1

사업단 소속이 아닌 행정직원 인건비 지급

- ▶ ○○대학교 ○○사업단은 행정직원 인건비를 책정하기에는 사업비가 부족하여, 산학협력단 소속 타 연구소에서 근무중인 행정직원을 겸직 개념으로 활용하여 인건비 지급



사례 2

해당 집행비목이 아닌 항목에서 인건비 지급

- ▶ ○○대학교 ○○사업단은 행정직원 인건비를 산학협력전담인력 인건비에서 지급함



예방책

- 필수적으로 행정인력 4대보험 적용 필요
- 산학협력전담인력과 행정인력에 대한 개념 및 정의를 확실하게 숙지



PART 3

사업비 집행 관련 주요 위반사례

● 성과급



개요

-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여도 평가 등 기준이 미비하여 부적정 집행 발생



관련 규정

〈BK21 플러스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21조(사업단 운영비) ② 사업단 운영비는 인건비, 성과급, 국내여비, 학술활동지원비, 산업재산권출원등록비, 일반수용비, 회의 및 행사개최비, 기타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며, 각각에 따른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성과급은 사업 참여교수 중 우수 연구성과, 사업단 운영상 기여 등에 대한 성과급으로 지원된다. 이 때 참여 교수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실적 등을 기초로 한 성과급 지급 기준을 사업단 자체 운영 규정에 명시하여야 하며, 기여도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사업비에서는 1인당 연 480만원(8차년도인 경우 240만원 이내) 범위 내에서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급여 성격의 성과급(정기적 지급, 고정급 지급 등)은 집행할 수 없다.(신진연구인력 또는 대학원생에 대한 성과급은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또는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항목에서 지급할 수 있다.)

52



알아두면 좋아요

성과급 지급 방법 및 절차

- 성과급은 반드시 기여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 산출된 기여율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함
- 기여율 계산 방법은 자체 운영규정에 상세하게 정의해야하며, 정량적 연구실적에 치중하기 보다는 연구실적, 교육실적(강의, 대학원생 배출 및 취업실적 등), 사업단 운영에 관한 기여도 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루어 지도록 정량적/정성적 지표를 적절히 배분할 것을 권장함
- 특히, SCI논문 한편 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은 기여도 평가로 볼 수 없으므로 연구실적 산정에 포함 권장
- 성과급 금액은 개인 당 연간 48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급여 성격의 성과급(정기적 지급, 고정적 지급 등)은 환수대상임. 학기 또는 연단위로 기여도 평가를 수행하여 지급해야 함.



부당집행사례

사례 1

참여교수 인센티브 지급 기준 미흡/누락

- ▶ ○○대학교 ○○사업단은 단순히 논문 1편당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식으로 명시하여 지급
- ▶ ○○대학교 ○○사업단은 기여도 평가 없이 사업단운영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일부 참여교수들에게 인센티브 일괄 지급
- ▶ 기여도 평가결과와 성과급 산정기준이 상이하여 연관성이 미약함



사례 2

예산액 대비 성과급 초과 집행

- ▶ ○○대학교 ○○사업단 당초 협약시 성과급을 15,000천원 편성하였으나, 16,000천원의 성과급을 집행함(1,000천원 초과 집행)

사례 3

참여교수 인센티브 과다지급

- ▶ ○○대학교 ○○사업단은 참여인력의 인센티브 지급범위(연간 4.8백만원 이내)를 초과하여 지급하였음



예방책

- 사업단 자체 운영규정에 성과급 지급을 위한 기여도 평가에 대한 세부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함



PART 3

사업비 집행 관련 주요 위반사례

● 사업단 운영비 집행 비율 초과



개요

- 당해연도 총 사업비(당해연도 협약금액, 전년도 이월금, 이자발생액)의 10% 또는 3천만원 이내에서 사업단 운영비 편성 및 집행이 가능하나 해당 비율을 초과하여 사업비 집행



관련 규정

〈BK21 플러스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21조(사업단 운영비) ① 사업단 운영비는 사업비 총액의 10% 또는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54



부당집행사례

사 례

사업단 운영비 과다 집행

- ▶ ○○대학교 ○○사업단은 연간 총 사업비가 3억원이나, 사업단 운영비를 35,000천원 집행함으로 인해 5백만원을 초과 집행함



예방책

- 사업단(팀) 연간 사업비 예산 변경은 산학협력단의 승인 하에 가능하나, 예산 변경 시 연간 총 예산을 기준으로 사업에서 정한 사업비 집행 비율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 필요
- 실행예산 변경 시 연구비 카드시스템 상의 “수정예산 관리” 메뉴에 즉각 반영하여 실제 운영 중인 예산으로 현행화하여 관리 필요
- 사업기간 종료 후 재단에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시 해당 비율 준수여부를 재 점검 필요



SUMMARY

< 사업단 운영비 >

주요집행내역

- 인건비: 업무전담직원 인건비, 참여교수 인센티브
- 사업 관련 국내 여비
- 학술활동지원비: 전문가초청자문료, 도서구입비, 국내·외 정보수집비
- 산업재산권출원등록비: 특허출원등록비
- 일반수용비: 사무용품구입비,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각종수수료
- 회의 및 행사개최비: 회의비, 각종 행사경비

지출시 확인사항

확인사항	관련서류	비고
• 제한항목 집행 여부 - 집행제한항목: 기자재, 내부구성원의 수당성 경비, 학회 연회비 등	지출결의서	
• 회의비 집행의 적정성 검증 - 회의일(회의록)과 집행일 일치 여부 - 품목중 주류 포함 불가 - 식대 관련 회의비는 회의당 1회 지출 가능	지출결의서, 회의록	
• 출장비 과다지급 여부 - 출장비산정시 출장기간 과다계상 또는 대학규정 미준수	대학여비규정 등, 지출결의서	
• 인건비 과다지급 여부 - 참여교수 인센티브 지급기준 준수여부 ※ 교수 1인당 연간 480만원 이내 - 사업무관인원의 채용 및 인건비 지급여부	지출결의서, 근로계약서	



PART 3

사업비 집행 관련 주요 위반사례

바. 교육과정개발비



● 교육과정개발비 목적 외 집행



개요

- 교육과정개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항목으로 사업비를 집행하거나 교육과정 개발 결과물이 미흡함



관련 규정

〈BK21 플러스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22조(교육과정 개발비) ①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한 각종 정보 수집비, 교재 개발비, 사례조사비, 외부전문가 활용비 등을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과정 개발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 필요성, 목적, 근거, 결과물 등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 할 수 있으며, 내부 구성원(사업단 소속 학과)에 대한 수당 성격의 경비는 지급할 수 없다.

56



알아두면 좋아요

교육과정 개발비 집행 방법

- 교육과정 개발비 집행은 예산집행 기준에 명시된 항목으로 집행되어야 함
- 정책과제나 영역 형태로 별도 수행할 경우 사전에 산학협력단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하며, 교내 과제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함
- 별도 과제 수행시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별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
- 과제비는 BK21 플러스 사업비에서 전액 집행된 것으로 처리하고 추후 정산 잔액은 당해연도 사업비에 환입 가능
- 교육과정 개발비 집행 시 반드시 결과물을 제출해야 함
(예시 : 교육과정 개발 결과물, 과제수행 결과 보고서 등)



부당집행사례

사례 1

내부 구성원에 대한 수당 지급

- ▶ ○○대학교 ○○사업단은 교육과정 개발활동에 참여한 내부(사업단 소속 학과) 참여교수에 대해 수당 지급

사례 2

교육과정개발비 목적외 집행

- ▶ ○○대학교 ○○사업단은 국제화프로그램 교재개발 목적으로 ○○백만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최종 결과물등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해당 금액은 영어위탁교육 목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확인됨
- ▶ ○○대학교 ○○사업단은 교육과정과 무관한 사항과 관련해(국외출장시 학내 안내 등) 관련자에게 전문가 자문료를 지급함
- ▶ ○○대학교 ○○사업단은 해당 교육과정 및 콘텐츠 개발 산출물 검토 결과 시판중인 교재와의 차별성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 사업단 연구 분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음



57

사례 3

교육과정개발 결과물 미흡

- ▶ ○○대학교 ○○사업단은 참여교수만으로 구성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교육과정 개발비를 집행하였으나 해당 과제의 연구결과물이 단순 정보수집 등에 한정되어 있는 등 결과물이 미흡함
- ▶ ○○대학교 ○○사업단은 교육과정 개발 결과에 따른 교과목을 해당 학기 개설 완료토록 계획서에 명시하였으나, 교과목 개설이 완료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 참여교수에게 원고료를 지급함





PART 3

사업비 집행 관련 주요 위반사례

● 교육과정개발관련 용역과제 등 추진 절차 미흡



개요

- 교육과정개발과 관련한 용역계약 및 협약 등의 절차를 누락함



관련 규정

〈BK21 플러스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22조(교육과정 개발비) ② 교재 및 교육과정개발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비 또는 용역비 등으로도 집행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단 참여교수 및 해당 학과 교수는 누구나 교재 및 교육과정개발을 위한 과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
2. 연구과제 형태로 교재 및 교육과정 개발을 할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별표를 참고하여 예산을 수립하고 각 대학의 정책연구과제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3. 내부(사업단 소속 학과) 구성원에게 인건비 및 수당성격의 경비는 지급할 수 없으나, 자체규정에 따라 원고료는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강의(도서)자료의 단순편집 등에 대하여는 지급할 수 없다.
4. 외부 민간업체와 교재 및 교육과정 개발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대한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용역기간은 사업 연차를 걸쳐 진행할 수 없으며 연차 사업기간 종료 이전에 완료하여 그 결과를 연차별 사업비 정산시 포함하여야 한다.

58



부당집행사례

사례 1

교육과정 개발 관련 절차 미흡

- ▶ ○○대학교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에서는 용역과제 또는 정책과제 수행을 위한 협약 절차 등이 없이 연구계획서만을 근거로 인건비 등을 지급하고 있음



사례 2

사업연차를 걸친 외부업체와의 용역 계약

- ▶ ○○대학교 ○○사업단은 외부 민간업체와의 용역계약을 2016.10.1.~2017.5.31.까지 체결하고 진행함



예방책

- 교육과정개발비에서 정책과제 및 용역비를 지급토록 하는 것은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드는 데 있어 외부 전문가 또는 외부인원이 포함된 연구진을 구성하여 교육과정 개발 연구를 진행토록 하고, 그 연구 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 경비를 계획서에 따라 집행토록 하기 위함임
- 내부 과제 계획구성원만으로 연구진을 구성하거나 별도의 협약절차 등 없이 계획서만을 근거로 내부 구성원에게 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것은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음에 유의
- 또한 대학 내부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용역과제, 용역과제 등의 관리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함

BK21 플러스 사업
부적정 예산집행 사례집

